

『공유재산(옥성면 꽃감생산시설)무상 사용허가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안 자 : 구미시장

2. 제안이유

- 옥성면 꽃감생산시설은 오지개발촉진법에 의거 오지면으로 지정된(행정자치부 지정) 옥성면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오지종합개발 사업으로 시행한 생산·소득기반시설로서 당초 사업계획 취지에 맞게 지역 주민(옥성 감조합 영농법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지역 고유자원인 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 소득 창출에 기여토록 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13조제3항제8호 규정에 「당해 시도, 시·군 및 자치구를 대표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전시 또는 판매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게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토록 되어 있어 오지지역 주민의 소득 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꽃감 생산시설을 무상으로 사용 허가코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 옥성면 콧감생산시설 현황

○ 위 치 : 구미시 옥성면 덕촌리 산21-14번지

○ 재산현황

• 부지내역(사유재산)

- 면 적 : 4,611m²

- 매입비 : 80백만원

- 소유자 : 옥성 감조합 영농법인

• 시설내역(행정재산)

- 종 류 : 관리동1동(109m²), 작업장1동(300m²), 건조장2동(720m²),
냉동창고1동(86m²), 저온창고1동(86m²), 부대시설 등

- 시설비 : 1,117백만원

- 소유자 : 구 미 시

☐ 무상사용 허가 내역

○ 재산내역

• 위 치 : 구미시 옥성면 덕촌리 산21-14번지

• 시설물 : 관리동1동(109m²), 작업장1동(300m²), 건조장2동(720m²),
냉동창고1동(86m²), 저온창고1동 (86m²), 부대시설 등

○ 신 청 자 : 옥성 감조합 영농법인

○ 사 용 료 : 무상사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4조,
동법시행령 제13조 및 제17조)

○ 사 용 기 간 : 허가일로부터 3년간(갱신가능)(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4. 참고사항

- 옥성 감조합 영농법인
 - 설립등기일 : 2006. 8. 17
 - 회 원 수 : 106명(회장 장영호)
- 관련법령
 - 『오지개발촉진법』 제1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2항, 제21조, 제24조제1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13조제3항, 제17조제4항
 - 경상북도 새마을봉사과-5572(2005.12.9)호의 제3차 오지종합개발 5개년계획 확정통보 지침과 관련임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의거
 - 행정자치부 오지종합개발 5개년계획에 의거 오지개발지구로 지정된 옥성면 덕촌리 곳감 생산단지조성사업 주체인 옥성 감조합 영농법인에게 곳감생산시설을 무상으로 사용 허가하여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함
- 주요 내용은
 -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전시·판매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단체 또는 법인에게 사용 허가하는 것으로써
 - 무상사용 허가내역은
 - 옥성면 덕촌리 산21-14번지, 부지면적 4,611㎡에

- 시설물 규모는 관리동 1동(109㎡), 작업동 1동(300㎡), 건조장 2동(720㎡), 냉동창고 1동(86㎡), 저온창고 1동(86㎡), 기타 부대시설 등이며
- 옥성 감조합 영농법인에게 시설물을 허가일로부터 3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동의를 구하는 것임